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경호·경비체제 개편 관련>

- | | |
|------------------------------|------------------------------|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1호) |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72호) |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8호) | ■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29호) |
|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2호) |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58호) |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87호) | ■ 정창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70호) |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88호) | ■ 황 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0호) |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07호)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61호) |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35호) |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25호) |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44호)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06호) |
|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47호)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27호) |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57호) | |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II. 개 요	25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5
2.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28
3. 해외 의회 경비 체계	32
III. 검토의견	35
1. 국회경호조직 신설 관련	35
2. 의장의 경호권 확대(염태영·박정현·용혜인·채현일·위성곤의원안) ...	47
3. 경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박용갑의원안)	49
4. 경찰기동대 파견 요청 근거 마련(박정현의원안)	52
5. 강제집행 승인 절차 신설(채현일의원안)	54
6.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 확대(박용갑의원안)	56
7. 국회 회의 방해죄 강화(채현일의원안)	60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영배 · 강유정 · 김동아 · 김영호 · 한정애 · 문금주
한병도 · 이학영 · 윤후덕 · 문정복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5.
 - 3) 회 부 일 : 2024. 12. 6.
- ※ 의안번호 : 62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 김한규 · 강유정 · 강훈식 · 박정현 · 모경중
김영환 · 박민규 · 백승아 · 이재관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 의안번호 : 624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44조).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병기 · 문진석 · 박홍배 · 김 윤 · 박상혁 · 윤종균
박 정 · 장경태 · 한병도 · 허성무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5.
 - 3) 회 부 일 : 2024. 12. 6.
- ※ 의안번호 : 625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4조).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수진 · 정태호 · 김정호 · 남인순 · 허성무 · 민형배
박 정 · 이연희 · 송옥주 · 한정애 · 박홍근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6.
 - 3) 회 부 일 : 2024. 12. 9.
- ※ 의안번호 : 628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박용갑 · 장철민 · 김영호 · 박 정 · 한민수 · 문정복
황명선 · 복기왕 · 황정아 · 이소영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6.
 - 3) 회 부 일 : 2024. 12. 9.
- ※ 의안번호 : 628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염태영 · 복기왕 · 김준혁 · 박정현 · 민병덕 · 김남근
박 정 · 이해식 · 안태준 · 박홍근 · 손명수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9.
 - 3) 회 부 일 : 2024. 12. 10.
- ※ 의안번호 : 630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음.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됨.

이에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비대는 회의장 밖의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3항).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광희 · 박용갑 · 정진욱 · 주철현 · 박해철 · 민형배
박 정 · 김 윤 · 김준혁 · 민병덕 · 김우영 · 양문석
이재강 · 조계원 · 김성환 · 임미애 · 모경중 의원(17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3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제144조).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용우 · 박 정 · 모경종 · 이원택 · 진선미 · 민병덕
김한규 · 김교홍 · 박정현 · 박주민 · 백승아 · 백혜련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4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박 정 · 박해철 · 신정훈 · 박용갑 · 김현정 · 문금주
송재봉 · 강유정 · 송옥주 · 이용우 · 임오경 · 장경태
권칠승 · 어기구 · 김정호 · 김주영 · 윤준병 · 이연희의원(18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4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조인철 · 정진욱 · 한정애 · 박민규 · 박해철 · 신정훈
안도걸 · 박용갑 · 양부남 · 이건태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5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해식 · 위성락 · 남인순 · 박 정 · 박용갑 · 한병도
염태영 · 박상혁 · 박정현 · 서영석 · 서영교 · 정을호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7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균택 · 추미애 · 한민수 · 김태선 · 박지원 · 김태년

서영교 · 김현정 · 강유정 · 박정현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 의안번호 : 64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고 있으며, 국회 외곽경비와 출입 관리,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게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사당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국헌 문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박정현 · 김 윤 · 박홍근 · 진선미 · 이용우 · 박홍배
이광희 · 김동아 · 고민정 · 박희승 · 김남근 · 노종면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3.
 - 3) 회 부 일 : 2024. 12. 16.
- ※ 의안번호 : 645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험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험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정청래 · 김현정 · 장경태 · 최민희 · 장종태 · 임오경
허종식 · 진선미 · 박지원 · 민병덕 · 모경종 · 김승원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3.
 - 3) 회 부 일 : 2024. 12. 17.
- ※ 의안번호 : 647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 144조제2항 ·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제5항 신설).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회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황 회 · 안규백 · 김병주 · 추미애 · 민병덕 · 정성호
한민수 · 김태년 · 이연희 · 박용갑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6.
 - 3) 회 부 일 : 2024. 12. 17.
- ※ 의안번호 : 65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 · 소병훈 · 윤종균 · 김남희 · 김교홍
신정훈 · 김성환 · 서영교 · 윤종오 의원(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7.
 - 3) 회 부 일 : 2024. 12. 18.
- ※ 의안번호 : 656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채현일 · 복기왕 · 이재강 · 신정훈 · 장철민 · 강득구
박상혁 · 최민희 · 김민석 · 김태년 · 양부남 · 전재수의원(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8.
 - 3) 회 부 일 : 2024. 12. 19.
- ※ 의안번호 : 66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나누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비상계엄의 집행에 동원된 국군과 경찰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의 개의와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청사와 국회 경내로의 출입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진입이 전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며, 특히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국회법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의무와 회의 방해 금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안 제143조)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안 제144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150조의2 신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함으로써(안 제165조 및 제166조),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 선포 등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위성곤 · 모경중 · 김성환 · 김한규 · 주철현 · 이춘석
박희승 · 한병도 · 서영교 · 이건태 · 허 영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20.
 - 3) 회 부 일 : 2024. 12. 23.
- ※ 의안번호 : 680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정문 · 양문석 · 복기왕 · 김한규 · 이연희 · 이상식

박 정 · 임광현 · 신정훈 · 정태호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 의안번호 : 71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II. 개 요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계엄군의 출입을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이는 계엄 시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보유한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¹⁾에 반하는 것임.

동 사태가 발생했던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²⁾

이에 19건의 개정안은 입법부의 지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국회 경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김영배의원안 등 19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 경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직의 명칭은 의안별로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경비대, 경위대, 국회경찰대, 경호경비대, 국회경호대 등으로 다양함. 다만, 박균택의원안은 경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폐지하는 내용을 수반한 점, 위성곤의원안은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설치를 정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부에 요청하도록 한 점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차이가 있음.

둘째, 김영배의원안 등 7건의 개정안은 신설되는 국회 경비 조직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김영배의원안 등 12건의 개정안은 신설 조직에 대한 의장의 지휘권을 법률에 명시함.

셋째, 국회 경호·경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선미의원안 등 8건의 개정안은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김병기 의원안 등 8건의 개정안은 소속 직원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넷째, 국회 경호조직 신설 외에 경호·경비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염태영의원안 등 5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박용갑의원안은 의장의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박정현의원안은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채현일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려는 경우 국회의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여섯째, 벌칙과 관련하여 박용갑의원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확대하여 적용범위를 넓히고, 채현일의원안은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지휘·명령 또는 이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국회 경호·경비 조직 신설 관련				제도 개선 관련	벌칙 관련
	특사경 부여	무기 사용	경찰 파견	비 고		
김영배 의원안			○			
김병기 의원안		○				
이수진 의원안		○	○			
박용갑 의원안		○			○ (경호구역 지정)	○ (회의방해죄 확대)
이광희 의원안		○				
이용우 의원안						
채현일 의원안			○		○ (경호권 확대, 영장 집행절차 개선)	○ (회의방해죄 강화)
이정문 의원안	○					
진선미 의원안	○					
조인철 의원안	○					
이해식 의원안	○					
정청래 의원안	○					
염태영 의원안			○		○ (경호권 확대)	
용혜인 의원안		○	○		○ (경호권 확대)	
박정 의원안	경위대 ○	○	○			
박균택 의원안	○	○		경위 폐지 (\$144 삭제)		
박정현 의원안	국회 경찰대	○	○		○ (경호권 확대, 경찰기동대 파견 요청)	
황희 의원안	경호 경비대	○				
위성곤 의원안	국회 경호대			정부에 설치 요청	○ (경호권 확대)	

2. 현행 국회 경비·경호 체계

가. 법적 근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內部警察權)³⁾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⁴⁾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발현됨.⁵⁾ 다만, 제정안의 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은 국회의 경호·경비 제도이므로, 아래에서는 경호권과 의원가택권을 중심으로 설명함.

먼저,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⁶⁾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함.

한편,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항상 행사할 수 있음. 경호권과 달리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원가택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⁷⁾

3)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4)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6)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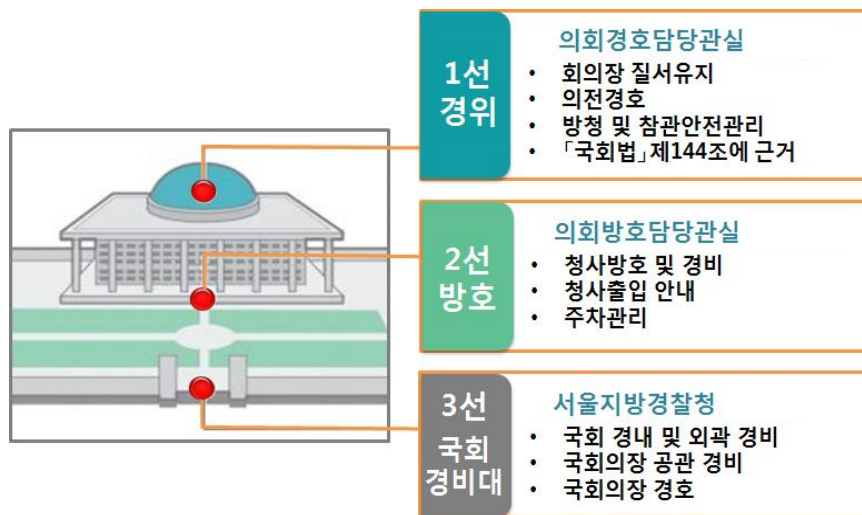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나. 현행 국회 경비·경호체계⁸⁾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됨.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서울특별시경찰청)가 수행함.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경위와 방호는 「국회법」⁹⁾ 및 「국회사무처 직제」¹⁰⁾ 등에

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8)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이상훈,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NARS 간담회 발제문, 2024.,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9)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10)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근거한 조직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직 국회공무원(경위직·방호직)과 공무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¹¹⁾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고,¹²⁾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 중임. 참고로, 1951. 3. 22. 최초로 국회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장 산하에서 운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2. 기준 국회경비대 현원은 123명임.

[표-2] 국회 경호 관련 조직 현황

(2025. 2. 1. 기준)

구분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조직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대장(총경) 1명, 행정과, 경비제대(4개), 의장경호대
인원	경위직 69명	방호직 124명 공무직 40명	123명
주요 업무	-경호·방호 기본계획 수립 -본회의·위원회 경호 -외곽경비업무 협의·조정 -테러 예방·대응 등	-국회 청사 <u>시설의 방호 및 경비</u> -국회의사당 <u>경내 질서유지</u> -주차 관리 등	-국회 <u>경내 및 외곽 경비</u> -국회의장 경호 및 공관 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12)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해 “과건”된 경찰력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상 과건이 아닌 「행정절차법」 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나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¹³⁾ 및 경호체계통일성¹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성·긴급성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분란한 명령하달, 경호·경비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⁵⁾

13)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 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14)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뜻함.

15)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해외 의회 경비 체계¹⁶⁾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의회경찰(U. S. Capitao Police: USCP)이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의회가 직접 선발하며, 수행 업무는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 연방의회 지도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국가원수·고위급 인사의 경호임. 현재 의회경찰은 약 2,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밖에 운영 및 행정직을 맡고 있는 350명의 일반인이 의회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음. 의회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경찰(Bundespolizei)을 두고 있고, 의회경찰은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연방경찰의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일부 보안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일반 경찰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서만 체포·수사를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169명(사설 보안담당관 제외) 규모임.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사무처 산하조직인 보안안전실(Reception, Security and Safety Division), 공화국 수비대¹⁷⁾ 의회 파견대, 소방 파견대, 경찰 등 복수의 조직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회 파견대 지휘관은 의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음.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방문객의 범죄이력 조회, 의사업무 방해 행위 감독 등의 업무

16)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17)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산하 조직으로,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엘리제궁)과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의 경호경비를 담당함.

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는 파리경찰국(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Security Department: PSD)을 창설하였고,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음. 한편, 의회 외곽은 특별임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경찰부대인 의회 및 외교 보호사령부(Parliamentary & Diplomatic Protection Command: PaDP)에서 담당하며, 현재 약 500인의 경호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경찰 인력은 의회경호국장의 지휘를 받음.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위가 의회 내부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경찰관(동경 경시청 기동대 담당)은 의회 외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의사당 내부의 경찰을 담당할 수도 있음. 경위가 소속된 경무부는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처 아래 조직되어 국회 경호업무(원내 경비, 정부 요인 및 외국 국민 경호)를 수행하며, 경무부장은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마지막으로, 캐나다 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창설하여, 의원·의회직원·방문객 보호, 의회 건물과 경내 경비, 의회 출입통제, 외곽경비, 경내 긴급상황 대처 및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소속이나, 양원 의

장의 지휘를 받음.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경호·경비체계의 구성, 외곽경비 업무의 자체 수행여부, 인력 충원 방식 및 업무수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Ⅲ. 검토의견

1. 국회경호조직 신설 관련

가. 국회 경호조직 근거 마련

19건의 개정안은 국회 경호·경비 조직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조직의 명칭, 경찰공무원의 파견 근거, 의장의 지휘감독권 명시 등과 관련하여 의안별로 차이가 있음.

[표-3]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기관 명칭	경찰 파견 근거	의장지휘권 명시	비 고
김영배의원안	국회경비대	○	○	
김병기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	
박용갑의원안				
이광희의원안				
이용우의원안			○	
채현일의원안		○	○	
이정문의원안			○	
진선미의원안	국회경찰			
조인철의원안			○	
이해식의원안				
정청래의원안			○	
염태영의원안	경비대	○		
용혜인의원안		○		
박정의원안	경위대	○	○	
박균택의원안	국회경찰대		○	경위 폐지(§144 삭제)
박정현의원안		○	○	
황희의원안	경호경비대		○	
위성곤의원안	국회경호대		○	정부에 설치 요청

상기의 개정안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노출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독립적인 경호·경비조직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 독자적인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현행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관리권 보유, ②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③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 ④ 청원경찰 활용, ⑤ 특수경비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다수의 개정안은 국회경호조직을 설립하여 자체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면이 있는 반면, 조직법적 근거 마련 외에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상당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어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¹⁸⁾

[표-4] 독자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 구축방안 비교

구 분	장점	단점
경찰에 대한 지휘권 보유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립 가능	경찰청 소속 유지로 인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재발 우려

18) 위성곤의원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국회경호조직을 정부에 설치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직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이 행정부에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되는 점, 비상상황에서 해당 조직에 대한 국회의 지휘·감독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 분	장점	단점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능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성상 물리력 행사를 위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보완에 한계 존재
경호·경비 조직 신설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국회경호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필요 · 기관 설립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단시간 내 실현 어려움
청원경찰 활용	별도의 입법 불필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능)	·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운영 등에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많은 국가시설에서 청원경찰을 방호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음
특수경비원 활용	· 별도의 입법 불필요 (「경비업법」에 따라 가능) · 경비절감 가능	· 특수경비원 교육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경찰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 · 특수경비원의 신분제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로 전문성 저하 우려

자료: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로, 국회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수의 제·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¹⁹⁾ 동 제·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과 같이 국회 경호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경비조직(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박균택의원안은 「국회법」 제144조²⁰⁾를 삭제한 반면 다른 개정안

19) 2025년 2월 11일 기준 동 개정안 외에 3건의 제정안(「국회 경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위처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과 8건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된 상황이며, 이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②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20)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동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신설되는 조직과 기존 경비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 경비업무를 양 기관의 이원화된 체계로 수행할 경우에는 기관 간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 조직이 동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업무 이관 및 소속 직원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국회경호조직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발의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협조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소속 공무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는 두고 있으나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며,²¹⁾ 소속공무원의 무기 사용 근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 가능 무기의 종류 명시, 과도한 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 등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편,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국회 경호·경비체

다.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문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경호·경비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은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경찰을 선발·구성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관 파견의 경우 여전히 인사·예산권 등을 경찰청에서 보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진선미·박정·조인철·이해식·박균택·
정청래·황희·이정문의원안)

8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 경위(警衛) 또는 국회경호조직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진선미의원안은 국회 경위(警衛)와 국회경호조직을 대상으로 규율한 반면, 박정·조인철·이해식·박균택·정청래·황희·이정문의원안은 국회경호조직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5]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진선미의원안	박 정·조인철· 황 희·이정문의원안	이해식·박균택· 정청래의원안
(규정 없음)	<u>경위 및 국회경호조직 소속 공무원이</u>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7급 이상: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8급 이하: 사법경찰리 직무 수행	<u>국회경호조직 소속 공무원이</u>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7급 이상: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8급 이하: 사법경찰리 직무 수행	<u>국회경호조직이</u>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들 개정안은 경위 또는 국회경호조직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직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장 등 주요요인에 대한 테러·범죄 가능성 및 국회 내 질서유

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긴급체포, 압수·수색·검증, 강제처분 등이 가능²²⁾하여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질서유지가 가능한 점²³⁾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경위 또는 국회경호조직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경호조직과 유사하게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²⁴⁾에서 소속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전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3)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 또는 국회경호조직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수사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무기 사용 근거 마련(이수진·김병기·박용갑·이광희·박정·
박균택·박정현·용혜인의원안)

8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 경위(警衛) 또는 국회경호조직이 무장 또는 무기 휴대·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무기 사용 주체로 이수진·박정현의원안은 국회 경위(警衛)와 국회경호조직 파견 경찰관으로 규정한 한편, 김병기·박용갑·이광희·박정·박균택·용혜인의원안은 국회경호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6]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이수진·박정현의원안	김병기·박용갑· 이광희·박 정· 박균택·용혜인의원안
(규정 없음)	<u>경위 및 국회경호조직 파견 경찰관</u>의 무기 휴대·사용 가능 - (박정현의원안) 국회운영과 국가 안전 관련 작전 수행 시 개인화기 외 공용화기 사용 가능	<u>국회경호조직</u>이 무장 또는 무기 등 사용 가능 - (박용갑의원안)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이들 개정안은 경호 또는 질서유지 업무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위 또는 국회경호조직이 무기²⁵⁾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25) 다수의 개정안은 “무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수의 개정안은 국회경호조직 등의 무기 사용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경호업무 수행에 따른 공권력 남용 및 과잉대응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 점,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 군사경찰 등 유사 직종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 사용 등에 따른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7]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련 입법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 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2. 의장의 경호권 확대(염태영·박정현·용혜인·채현일·위성곤의원안)

염태영·박정현·용혜인·채현일·위성곤의원안은 회기 여부와 관계 없이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박정현·위성곤의원안은 경호권 행사 목적에 의원의 신변보호를 추가하고, 염태영·용혜인·채현일의원안은 경호권의 행사범위를 국회 안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염태영 의원안	박정현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채현일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내부경찰권인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건의 개정안은 해당 권한의 행사 요건(목적, 범위 및 시기)을 확대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여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²⁶⁾을 행사할 수 있고 의원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항상 행사할 수 있는 점²⁷⁾을 고려하여 경호권의 확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6)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2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3. 경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박용갑의원안)

박용갑의원안은 국회의 질서 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원활한 회의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위한 경호·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용갑의원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u><신설></u>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①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국회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부지,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8조의3에 따라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4.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현행	박용갑의원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신설>	<u>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u> <u>5.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u> 제144조(국회경비대의 설치·운영 등) <u>④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에서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호 및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회 질서유지, 회의 출석, 천재지변, 내우외환 및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경비대가 경호구역 등에서 경호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8)에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

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경호구역에서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경비대가 경호구역 등에서 경호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근거만 두고 있는데, 경호업무의 특성상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국회경비대가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안 제143조제2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48조의3²⁹⁾은 금지규정으로 인용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같은 항 제3호는 인용조문의 내용상 「계엄법」³⁰⁾이 아닌 헌법³¹⁾을 인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29)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0)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경찰기동대 파견 요청 근거 마련(박정현의원안)

박정현의원안은 국회 경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파견된 경찰기동대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정현의원안
<신설>	제144조의2(파견 경찰기동대)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에 긴급을 요한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인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국회로 파견된 경찰기동대는 파견이 결정된 시점부터 「경찰직무 응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파견된 기동대의 해체는 「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공고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국회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³²⁾과 동시에 국회 경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기동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받아 국회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다.

있음.

개정안은 파견된 경찰기동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해체 결정권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드러난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권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파견 경찰기동대와 관련하여 「경찰직무 응원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경찰청 내 조직간 행정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³³⁾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경찰청) 사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인용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33)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시·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5. 강제집행 승인 절차 신설(채현일의원안)

채현일의원안은 「형사소송법」 제115조³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경우 국회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표-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채현일의원안
<신설>	제150조의2(강제집행의 승인)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³⁵⁾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소가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이라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 34) 「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 35) 「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築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후 국회사무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해 왔음.³⁶⁾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최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검찰 및 경찰의 국회 출입 증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다만,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³⁷⁾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시 책임자 또는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을 요구함으로써 범죄 혐의 입증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이익과 국가 등 비밀 보호라는 이익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체계 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개별법인 「국회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6)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금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회사무처 입장문”, 2023.

37)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6.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 확대(박용갑의원안)

박용갑의원안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경호구역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회의, 회의장 출석 또는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용갑의원안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등 출입의 방해 금지) ----- ----- 위원회 회의장,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 -----.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48조의3 및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할 목적----- 그 부근(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을 포함한다) ----- 폭력행위,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의 행위 ----- -----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 -----.
	부 칙

현행	박용갑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³⁸⁾은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및 국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회의장 외에 경호구역 등의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나 회의 출석, 국회 출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 및 국회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려는 것임.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출입 방해 금지 의무 및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회의 출석 방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38)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니는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음.³⁹⁾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기능하는 곳으로 의원의 권한 행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른 경호구역은 국회의 질서유지 및 국회의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임. 즉, 경호구역은 이들 회의장과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의 경호구역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166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확대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40)의 구성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회의 출석 또는 국회 출입을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하려는 취지라면 같은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혹은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39)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40)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개정안은 안 제148조의3과 법 제165조에 대한 벌칙을 안 제166조제1항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규율내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인용조문별로 벌칙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7. 국회 회의 방해죄 강화(채현일의원안)

채현일의원안은 폭력행위 등의 수반 여부와 관계 없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채현일의원안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 ----- ----- -----방해하려는 행위를-----.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 ② (생략)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⁴¹⁾은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및 국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폭력행위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원의 회의 출석 방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이 요구됨.⁴²⁾

41)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형법」⁴³⁾은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법정형 폭력행위 등으로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의 법정형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회의장 출입 등의 방해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의 법정형을 ‘사형,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⁴⁴⁾를 참고하여 후자의 위법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내란죄 및 국회회의방해죄의 죄질·성격, 「형법」⁴⁵⁾ 상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에 대한 형량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칙의 강화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2)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43)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44)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문 의 처
02)6788-5015